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운위가 의결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의결 요구권 도입〉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3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운위가 의결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재의결 요구권 도입(안 제25조제7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장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운위가 의결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의결 요구권 도입(안 제25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기업 장의 임면 -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u><신 설></u>	○ 공기업 장의 임면 - (현행과 같음) - <u>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u>

현행법령¹⁾은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재의결 요구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운위가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를 심의·의결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용과 관련된 ‘낙하산’ 논란 등을 방지하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기준 공기업은 총 31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7개)이며, 2023년 결산 기준 공기업의 자산 및 부채 규모는 각각 721.5조원, 522.9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66%, 74%를 차지하는 등 공기업의 중요성이 큰 상황임.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재무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기업	자산	589.8	604.9	644.9	709.8	721.5
	부채	384.6	394.1	429.4	507.8	522.9
	당기순이익	1.2	△0.9	△1.9	△22.1	△8.0
준정부 기관	자산	192.8	208.6	227.4	251.1	281.9
	부채	119.9	124.1	127.8	135.6	155.8
	당기순이익	△0.7	3.1	6.7	9.5	5.4
기타 공공기관	자산	66.8	76.7	89.5	87.1	93.0
	부채	20.1	23.6	27.1	27.5	30.2
	당기순이익	0.3	2.9	6.0	△1.4	△0.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현행법 역시 준정부기관의 장(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기관 장 임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²⁾)에 비해 공기업 장을 임명하는 경우 공운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기관장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 및 캠프 출신 인사 임명 등의 이른바 ‘낙하산’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 공기업 기관장 채용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원 서류를 폐기하는 사례³⁾도 발생한 바 있음.

2) 다만,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및 주무기관의 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3)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관련 서류 폐기해버린 에스알”, 데일리환경, 2024.10.14. 등

이러한 공기업 기관장의 ‘낙하산’ 논란은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와 같은 낙하산 논란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개정안은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기관장 임명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국회 차원의 사전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관장 임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현행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4조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이에 따르면 공기업 기관장이 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 제34조제3항에서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임.

개정안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사전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기관장이 임명될 가능성을 줄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에 국회가 사전적 견제 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둌으로써 부적절한 채용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권자가 행정부처에 있으므로 국회가 이를 사전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의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요구는 행정부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의 재의결 요건 중 ‘현저하게 부적당’ 요건이 불명확하여 요건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요건의 불명확성과 관련하여는, 현행법 시행령⁵⁾에서도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요건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후보자 재추천 요구 사례에 대하여 인사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운영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심의·의결한 임원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임원 후보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
<u>⑦</u> (생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7